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 심 사 보 고 서

2025. 4. 18.(금)



행정복지위원회

#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11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13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9.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6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39호
- 제출일: 2025년 3월 21일
- 제출자: 전홍배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 2. 제안사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책무등·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고용의 촉진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2021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달성군은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① 수급자+한부모가족 ②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보고서<sup>1)</sup>상 한부모 가구는 일반 가구의 6.8%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광역조례 지원사업보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보다 많은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위법령상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바, 집행부서에서는 사업 시행 시 특례사항에 해당하는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요약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출산전 임신부 및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의 경우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li></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 제5조의2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li></ul>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37호
- 제출일: 2025년 3월 21일
- 제출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 2. 제안사유

- 많은 지자체에서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 피해를 입은 주민을 예우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송고한 뜻을 기리고 있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적용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의로운 군민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인정과정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4.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함입니다.
-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대구 달서구·남구에서 “의로운 구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광역에서 제정된 사항에 대한 유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0조를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무에 대해 각자 조례 및 규칙을 정하기에 양자 간의 모순·저촉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 본 조례안에의 규정하고 있는 위로금·예우 사항은 현행 광역 및 인근 타 자치구와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단체	위로금 지급 범위	예우 사항
대구광역시	1인당 2천만원 이하	포상 / 행사초청 / 추모식·비 건립등 선양사업 / 향토지 공적 게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1인당 1천만원 이하	포상/ 행사초청 / 추모식·비 건립등 선양사업 / 홈페이지 공적 게재
대구광역시 남구	1인당 1천만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당 5백만원 이하	포상 / 행사초청

- 전문성을 담보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로운 군민 등의 인정신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46호
- 제 출 일: 2025년 3월 21일
-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 2. 제안사유

-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농인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활성화 및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지원(안 제6조~제7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농인을 위한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농인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등록현황에서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명 가량이며, 이중 청각과 언어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수는 45만여 명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약 18% 가량입니다. 달성군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24년 기준 청각과 언어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수는 등록장애인수의 약 23%(2,918명)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계	5,045	1,131	1,045	2,795	123	1,259	226	698
13,044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뇌전증	
	465	24	45	75	24	66	23	

자료: 사회복지과

- 광역 및 인근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단체	조 례 명	일 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	2019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 종합적인 검토 결과 ▲전국 평균 대비 농인들이 많고 ▲인근 자치구 등에서 기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안 조문 등이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진행되는 점 등을 토대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44호
- 제 출 일: 2025년 3월 24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 2.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연가일수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방지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불가 규정 삭제(안 제15조)
- 저연차 공무원 대상 새내기 도약휴가 규정 신설(안 제15조)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5)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후생 복지제도의 향상을 위한 특별휴가의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입니다.
- 제15조(특별휴가)의 경우 영이 2025년 2월 11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의 양립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배우자 출산 관련 개정된 휴가일수를 반영하여 기존 10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을 반영(영 별표1)하였으며,
-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10항의 새내기 도약휴가의 경우, 영 제7조의7제1항에서 공무원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공직사회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49호
- 제출일: 2025년 3월 24일
- 제출자: 자치행정과장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 있어서 포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포상 후보자 선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운영실태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의 목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을 지급하고자 함이며, 이에 대한 공정성·영예성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공적에 대한 심사가 필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 기존 공적심사위원회는 본 조례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음을 명기한 바 있습니다.
- 이같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자치단체 인력 운영 효율성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나, 포상 목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공적사항 심사를 위한 감사, 조사, 징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2014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획감사실에서 법무감사실로 조정된 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50호
- 제 출 일: 2025년 3월 24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수당 지급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시험수당 지급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여비지급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제5항에 따르면 “시험위원·시험관리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임사무에 대해 시험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51호
- 제 출 일: 2025년 3월 24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 2. 제안사유

-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달성군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탁교육훈련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와 관련된 사항(안 제2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제1항에는 영 별표2에서 정한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위임조문을 명기하고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구분	기준	반납액
1. 제35조제1호·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5조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times \frac{1}{2}$
3. 제35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비고

-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추가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52호
- 제출일: 2025년 3월 24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 2.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24.10.4. 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의사를 반영하고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기금용어 정의의 근거 규정 정비(안 제2조)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안 제7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과 이동 조문을 현행화 한 부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이동 조문을 현행화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상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53호
- 제출일: 2025년 3월 24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 2. 제안사유

- 약산힐링원 개발사업(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변경)
  - 개발사업이 중단되었던 (구)약산온천호텔을 철거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변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 활력을 제공하고자 함.
  - 기존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구) 약산 온천호텔 부지를 포함한 관광인프라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구지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 문화·체육·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자기계발의 기회가 적은 구지 농공단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공단지 활력을 높이고자 함
-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제2차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수요에 발맞추어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논공과 옥포지역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문화 접근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 이용인원 대비 열악한 주차환경과, 높은 경사도로 인한 이중주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공작물을 설치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 위 치 : 논공읍 하리 509번지 일원
- 기 간 : 2024. 12. ~ 2028. 6.
- 규 모 : 부지면적 21,106㎡ (매입면적 9,600㎡)
- 주요시설 : 캠핑/글램핑장, 놀이시설(네트), 썰매장(사계절), F&B(식음)시설
- 총사업비 : 203.8억원
- 부지매입비 108억(기투자 57억), 건축비 15.4억, 조경·토목비 65.5억  
예비비 8.2억, 기타 2억, 부대경비 4.7억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 × 면적) : 3,804,480,000원
- 건물(사업비) : 1,540,000,000원

- 추진상황

- 2024. 12. : 부동산(토지) 매매 약정 체결

- 2025. 1. : 감정평가 의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2025. 2. : 중간보고회 개최 및 사업계획안 수립
- 2025. 3. :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2025. 4. ~ 5. :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 2025. ~ 2026. : 인허가 및 실시설계
  - 2026. ~ 2028. : 착공 및 준공

나. 구지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 위 치 : 구지면 고봉리 224번지
- 기 간 : 2024. 12. ~ 2028. 12.
- 규 모 : 부지면적 3,016.9㎡, 연면적 2,009㎡, 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층 수	면 적(m <sup>2</sup> )	내 부 시 설
4층	474	기숙사, 공용공간, 화장실 등
3층	474	기숙사, 공용공간, 화장실 등
2층	480	피트니스센터, 다목적홀, 강의실 등
1층	481	식당,편의점,동아리실 등
지하	100	전기기계실

- 총사업비 : 82.7억원(국비 60억, 군비 22.7억)
- 공사비 63.5억, 설계비 3.7억, 감리비 7.7억, 시설부대비 0.2억, 예비비 7.6억

※ 기준가격	
- 건물(사업비)	: 8,270,000,000원(신축)
- 건물(시가표준액)	: 33,916,560원(철거)

- 추진상황
  - 2024. 11. : 청년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공모사업 선정  
(한국산업단지공단)

- 2025. 2.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 2025. 3. : 건축심의
- 향후 추진계획
- 2025. 7. ~ 12.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6. 3. ~ 2027. 4. : 착공 및 준공
- 2027. 12. : 개관

다.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위 치 :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
- 기 간 : 2023. 11. ~ 2027. 12.
- 규 모 : 부지면적 8,477㎡, 연면적 4,119㎡, 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층 수	면 적(㎡)	내 부 시 설
3층	1,073	문화센터(문화강좌실, 오픈키친 등)
2층	1,073	어린이 체험 공간
1층	1,073	체육시설(테니스, 탁구장 등)
지하 1층	200	공용 설비

- 총사업비 : 255억원
- 부지매입비(기투자) 28억 (제3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원안가결)  
공사비 189억, 설계비 13억, 기타 25억

※기준가격

- 건물 신축(사업비) : 22,700,000,000원

- 추진상황
- 2023. 11. :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23. 12. :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 공모사업」 선정

- 2024. 2. : 지방재정투자심사(군) 및 부지매입 완료
- 2024. 4.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24. 9.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 2025. 1. : 공공건축 심의
- 향후 추진계획
- 2025 4.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6. 1. : 공사 착공
- 2027. 12. : 준공

라.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 위 치 : 옥포읍 교항리 2947번지
- 기 간 : 2023. 1. ~ 2028. 12.
- 규 모 : 부지면적 12,007.4㎡,
- 문 화 동 : 건축면적 1,225㎡, 연면적 3,016㎡, 지하1층/지상3층
- 수영장동 : 건축면적 1,316㎡, 연면적 1,600㎡, 지하1층/지상1층
- 주요시설 : 수영장, 도서관, 문화강좌실, 어린이건강놀이터 등
- 문 화 동(제1동)

층 수	면 적(m <sup>2</sup> )	내 부 시 설
3층	555	어울림 공간, 다목적 홀
2층	1,005	도서관
1층	1,225	문화센터
지하 1층	231	도서관, 관리실

· 수영장동(제2동)

층 수	면 적(m <sup>2</sup> )	내 부 시 설
1층	1,316	수영장
지하 1층	284	수영장 설비, 기계설비

- 총사업비 : 360억원
- 부지매입비(기투자) 115억(제3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원안가결)
- 공사비 180.5억, 설계비 13억, 기타 52억

※기준가격
- 건물(사업비) : 24,550,000,000원

- 추진상황
  - 2023. 1. :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23. 6.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23. 10. :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심의 완료(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24. 4. : 「2024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선정
  - 2024. 6. :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지매입 완료
  - 2024. 10.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변경)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25. 4. :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 2026. 1. ~ 2026.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7. 1. ~ 2028.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마.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 위 치 : 다사읍 매곡리 1515-3번지
- 기 간 : 2023. 7. ~ 2026. 4.

- 규 모 : 건축면적 921.94㎡, 연면적 1.627.82㎡, 지상2층  
주차면수 141대 정도
- 주요시설 :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공작물(철골 조립식)
- 총사업비 : 60억원
  - 공사비 56.5억, 용역비 1.5억, 부대비 2억

※ 기준가격  
- 공작물(사업비) : 6,000,000,000원

- 추진상황
  - 2023. 7. :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환경개선 계획 수립
  - 2023. 8.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군 자체) 진행
  - 2023. 10. ~ 2024. 4. : 기본구상 및 계획설계 완료
  - 2024. 5. : 공공건축심의 완료
  - 2024. 8.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5. 3. :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심의(市공원조성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 향후 추진계획
  - 2025. 5. : 공사 착공
  - 2026. 4. : 준공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시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 약산힐링원 개발사업건은 방치된 건축물 (구)약산온천호텔을 철거하여 주변 경관 개선을 통해 관광인프라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부지면적 21,106㎡ 규모 부지매입비 108억 (기투자 57억)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203.8억입니다.
- 구지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건은 문화·체육·교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부지면적 3,016㎡, 건물 연면적 2,009㎡로 총사업비 82.7억입니다.
-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건은 제2차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문화 수요 대비를 통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부지면적 8,447㎡, 건물 연면적 4,119㎡로 총사업비 255억원 정도입니다.
-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건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논공·옥포 지역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문화 접근성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며, 부지면적 12,007㎡, 건물 연면적 4,616㎡로 총사업비 360억원 정도입니다.
-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조성건은 달성문화센터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과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주차장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함이며, 건축면적 921㎡, 연면적 1,627㎡로 총사업비 60억원 정도입니다.

- 이를 위해 1건의 토지매입 및 4건의 건물과 1건의 공작물을 신축하여 총 669억 가량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였으며, 1개의 건물을 철거하여 약 3천3백만원의 공유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 본 계획안은 오랜숙원인 약산힐링원 개발, 구지·논공·옥포 지역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중인 ‘공유재산 총조사’에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54호
- 제 출 일: 2025년 3월 24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 2. 제안사유

- 학대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달성군 학대피해 아동 쉼터’ 를 운영할 예정이며,
- 해당 분야의 전문성, 노하우,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달성군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종사자수	비 고
달성군 학대피해아동 쉼터	달성군 관내 1개소	84.9m <sup>2</sup>	6명	

※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입소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소를 비공개 하고자 함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주요 위탁사무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진료 지원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시설장	보육사	임상치료사
인 원	6	1	4	1

라. 위탁기간: 5년(2025. 7. 1. ~ 2030. 6. 30.)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 진행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5. 3. : 민간위탁 계획수립
- 2025. 4. : 군의회 동의
- 2025. 4. ~ 6. :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별도첨부

아. 향후일정

- 2025. 4. : 군의회 동의
- 2025. 4. ~ 5.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5. 5. ~ 6.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5. 6. : 선정결과 공고 및 협약체결
- 2025. 7. : 위탁 시행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나.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5년 예산 : 220백만원(국 60백만원, 시 160백만원)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위탁을 예정하는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의회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상정되었습니다.
-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1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따라 2025년에 설치 준비중이며,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의 종류 중, 현 시설의 기본적 기능(숙식제공, 심리상담·치료, 학습 및 정서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민간위탁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기준 및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심리검사, 상담, 생활지도 등의 아동 특성에 따른 개별접근은 제4조제3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민간위탁시 국고 보조대상에 포함됨으로, 예산절감의 측면까지 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